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영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17

발의연월일: 2024. 6. 19.

발 의 자:김영배·복기왕·윤후덕

전현희 • 이학영 • 박희승

조 국・이병진・강유정

민형배 • 한병도 • 고민정

박범계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과 「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」은 지구온난화 및 기후위기의 가장 큰 원인인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중장기 및 기 간별 목표를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목표는 설정되어 있으나, 실제로 각 건축물이 얼마만큼의 에 너지를 사용하고 있는지,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목표에 부합하는지 철 저하게 점검되지 못하고 있음.

이에 정부는 사용된 에너지와 배출된 온실가스가 각 목표에 부합하는지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민께 공개하도록 하여,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함(제31조제2항).

법률 제 호
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1조제2항 중 "한다"를 "하고, 이를 평가 · 공개하여야 한다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1조(녹색건축물의 확대) ①	제31조(녹색건축물의 확대) ①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② 정부는 건축물에 사용되는	②
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	
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대통령	
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건	
물에 대하여 중장기 및 기간별	
목표를 설정·관리하여야 <u>한다</u> .	
	이를 평가 · 공개하여야 한다.
③ ~ ⑧ (생 략)	③ ~ ⑧ (현행과 같음)